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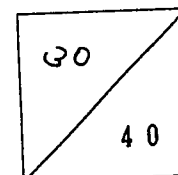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	10	1994. 4. 21.	총재 김명호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의취지 가계우대정기적금이 정기적금으로 통합되어 동 적금에 대해 별도의
예금지급준비율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략)

(붙임)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년이상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만기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하여는 8.0%	2. 2년이상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만기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8.0%	◦ 가계우대정기적금제도 폐지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 (생략)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1994. 5. 2. 부터 시행한다. 2. 1994. 5. 1. 이전에 계약된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시행일자 명시